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7.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3년 5월 4일
-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2023년 5월 11일
-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구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현안 사항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함으로써 의회 내실화 및 구민 의견 반영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토론회 등의 개최를 위한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진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
- 토론회 등의 결과보고 및 결과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제정조례안은

- 영등포구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하여 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해 구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견수렴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운영원칙)**에서 의장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운영원칙을 정함.
- **안 제4조(신청 및 승인)**는 토론회 등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개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또한, 개최를 승인한 경우에는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구의회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공고하도록 명시함.
- **안 제6조(진행)**는 사회자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안 제7조(결과반영 등)**는 토론회 등의 개최결과를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정 활동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구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토론회 등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의장이 승인한 토론회 등의 개최에 대해서는 개최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을 지향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정립하고자 하였음.

- 입법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을 통해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책 및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
----------	-----

발의연월 2023. 5. .
일: 발 의 자 : 유승용, 김지연, 이순우
전승관, 임헌호 의원(5인)

1. 제안이유

구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정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하여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여 의회 내실화 및 구민 의견 반영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토론회 등 운영 조례 목적(안 제1조)
- 나. 운영원칙(안 제3조)
- 다. 신청 및 승인(안 제4조)
- 라. 결과반영 등(안 제7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3. 5. 1. ~ 5. 6.)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세미나,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결과를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내 용			

년 월 일

신청의원(또는 위원회 위원장) :

(인·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따라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1. 회의개요

- 주 제 :
- 종 류¹⁾ :
- 일 시²⁾ :
- 장 소 :
- 참 석 자³⁾ :

2. 주요회의내용⁴⁾

3.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

1) 간담회/세미나/공청회/토론회 등 행사의 종류 기재
2) 간담회의 개최 연월일 및 시간까지 기재
3) 참석자의 성명, 소속 직위 및 발제자/토론자 구분 표시하여 기재
4) 참석자의 발언내용을 발언자 중심으로 요약하여 기재